

부산지방법원 2023. 3. 8 선고 2022가단33031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맥

담당변호사 김진수

변 론 종 결 2023. 2. 15.

판 결 선 고 2023. 3.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8. 12. 10.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18. 12.
10. 접수 제626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 C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10,479,031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한 1995.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전전양도받은 채권자이다.

나. C의 아버지이자 피고의 배우자인 망 E은 1987. 7. 10. 사망하였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C과 피고를 포함한 망 E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전부 상속하기로 상속재산 분할협약에 이르렀다는 내용으로 '1987. 7. 1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8. 12. 10.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소유권이전등기 무렵 C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제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울주군수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망 E과 피고가 부부로서 공동으로 노력하여 이룬 재산이나 망 E 명의로 등기하였을 뿐인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망 E의 상속인들은 망 E이 사망한 1987. 7. 10. 무렵 앞서 본 것 같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한 시점에 제기된 것이어서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 준수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법원에 현출된 모든 소송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았을 때 그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까지 법원이 직권으로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여 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등 참조).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 이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등 참조). 한편 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675호)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에 대하여 “등기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한다”고 정한다.

유언에 의한 분할지정이 없거나 무효인 경우에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또한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일종의 계약으로서 협의의 형식과 분할의 방법상 특별한 제한이 없다.

이 법원에 제출된 모든 소송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았을 때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약이 이 사건 소가 제소된 5년 이전에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 등기원인이 1987. 7.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기재된 것은 앞서 본 등기예규에 따른 것이다.

○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등기 신청당시 제출된 ‘상속재산분할협약서’상의 협의일은 2018. 12. 10.로 기재되어 있다.

○ 사망 이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망 즈음에 상속재산 분할협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상속재산 분할협약의 시기를 확정할 만한 문서 등의 자료가 없다.

○ 망 E이 사망할 당시 피고를 제외한 상속인 F은 24세(1963년생), C은 28세(1959년생), G(1967년생)는 20세로 모두 성년에 이르렀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8. 12. 10.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 중 법정상속분인 2/9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C의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C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이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법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그 성질상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인지에 관한 판단

C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법정상속분 2/9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를 상속하게 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C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이 자신의 법정 상속분을 포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것이 C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망 E과 피고는 부부사이로 망 E이 1979. 3. 31. 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래 망 E과 피고는 공동생활을 하여 왔고 망 E이 1987. 7. 10. 사망한 이후에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상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 망 E이 사망할 당시 C은 28세였고, 특히 망 E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에는 19세가량이어서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마련하는 데 특별히 기여한 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 C 외에 다른 두 자녀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포기하는 취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루어졌다.

○ 그밖에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일 즈음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앞서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불요식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망 E의 상속인들 사이에 언제 이루어졌는지 확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할 때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1995년경에 발생한 것이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민

별지